

● 제318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2차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23. 5. 2.

운 영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김원태 의원 외 38명 공동발의
- 나. 제안일 : 2023. 3. 29.
- 다. 회부일 : 2023. 4. 3.
- 라. 의안번호 : 610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의회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,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시행하고 있으나, 서울시 산하 일부 자치구에서는 최근 들어 5년 이상 재직 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, 30년 이상 재직 시는 3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, 울산광역시와 산하 자치구에서는 장기재직휴가 기간을 50일로 늘렸고, 전주시에서는 40년 이상 재직자 10일 휴가를 추가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해 볼 때 서울시의회 근무 공무원들이 장기재직휴가에서 상대적 차별을 받는 것은 용인하기 어려우며 특히 일부 타시도 지자체에서도 장기재직휴가를 개선하는 사례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 시의회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.

나. 주요내용

- 의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,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,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5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9조제1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병수)

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에게도 이를 확대 적용하고자 발의되었음.

2 장기재직휴가의 확대(안 제29조제11항)

- 안 제29조제11항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)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, 기존 재직기간별로는 각각 5일의 휴가를 추가 확대하려는 것임.

<표-1> 장기재직휴가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 안
(신설)	5년 이상 10년 미만 5일
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	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
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	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
30년 이상 20일	30년 이상 25일

-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공무원법」 1)과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2)에 따라 복무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.

1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경조사, 출산, 보건, 재해구호, 장기재직휴가 등의 특별휴가를 각 기관별 복무조례로 규정하고 있음.
- 이 중 장기재직휴가는 장기재직자에게 재직기간별로 휴가일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이며, 시의회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자가 의회 의장으로 변경(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·시행)되면서 장기재직휴가를 포함한 의회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체적으로 시행(2022. 1.13.) 중임.
 -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,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시행 중임.
- 최근 코로나19 비상근무 등에 따른 과도한 업무 부담과 경직된 조직 문화, 낮은 연봉 등으로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이 가속화되는 문제가 발생함.
- 이에 따라 양천구를 비롯한 서울 관내 자치구들은 5년 이상 복무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, 장기 근무자에게도 기존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복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(표-2 참조).
- 개정안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, 자치구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년 이상 복무 공무원에게도 휴가를 부여하고, 장기 근무자에게도 기존 휴가일수에 5일의 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으로 각각(서울시, 시의회) 발의되었음.
 - 동일한 내용의 “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음(2023.4.26.).

2)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<표-2> 서울시 및 자치구 장기재직휴가 현황

(단위 : 일, 2023년 4월 20일 기준)

구분	장기재직휴가			
	5년 ~ 10년미만	10년~ 20년 미만	20년 ~ 30년 미만	30년 이상
서울특별시	-	10	20	20
강남구	-	10	20	30
강동구	5	10	20	30
강북구	-	10	20	20
강서구	-	10	20	20
관악구	5	10	20	30
광진구	5	10	20	20
구로구	5	10	20	30
금천구	5	10	20	20
노원구	5	10	20	30
도봉구	5	10	20	30
동대문구	5	10	20	30
동작구	-	10	20	20
마포구	5	10	20	20
서대문구	5	10	20	30
서초구	-	10	20	20
성동구	5	10	20	30
성북구	-	10	30	30
송파구	10	20	30	30
양천구	5	15	25	30
영등포구	-	10	20	20
용산구	5	10	20	20
은평구	-	10	20	20
종로구	-	10	20	30
중구	-	10	20	20
중랑구	5	10	20	30

※ 광역자치단체는 인천·대전광역시가 5년 이상 장기재직휴가 일수(5일)를 반영하고, 다른 자치단체는 서울시 현행 장기재직휴가 일수와 비슷한 수준임.

- 개정안과 같이 휴가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자기 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, 사기 진작을 도모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는 효과가 기대됨.

- 다만, 휴가일수 증가에 따른 업무공백과 대직자의 업무 가중 등으로 의정활동 지원과 행정 서비스의 질 하락이 우려됨으로 안정적인 의정지원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대체자 지정, 휴가 분할 사용 등을 통해 업무공백 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.
- 또한, 개정안은 장기재직휴가를 기존 대비 재직기간별로 더 세분화하고 확대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적용시기와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부칙을 두지 않고 있어,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의 휴가일수에 대한 해석·적용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후 적용 대상과 방법 등을 지침 등으로 구체화 하여 시행해야 할 것임.

3 종합 의견

- 개정안은 「지방공무원법」과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별로 더욱 세분화 하고 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, 조기 퇴직을 예방하고자 발의된 것임.
- 이는 공무원에게 자기 계발 시간과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해 행정 서비스 질 제고와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.
- 다만, 공무원의 공직 이탈이 낮은 급여와 민원대응의 어려움, 시대에 뒤 처진 조직문화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에서 휴가일수 확대 이외에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임.
- 또한, 장기재직휴가 확대 시행으로 기존 공무원의 휴가일수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경과규정이나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함.